

# 의료법인화의 문제점



宋 泰 善  
〈국민병원장〉

## I. 머 리 말

필자를 비롯해 자신이 세운 병원을 의료법인화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병원을 하면서도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재산을 공익재산화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화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이나 세제면에서의 혜택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가지 규제만 정부로부터 심하게 받게 되어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회화하여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철저히 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많은 병원인의 의욕을 반감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의료는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강한 사회적 성격을 띤다. 의료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병원도 사회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병원과 공공병원의 비율에 따라 한 나라의 의료정책은 그 성격이 규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전체병원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병원에서 차지하는 개인병원의 높은 점유율을 줄이고 의료정책을 용이하게 펴기 위하여 개인병원의 「의료법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인병원의 경영자들이 병원을 의료법인화하려 하더라도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얻는 실익은 별로 없고 행정부서로부터의 통제만 많아져 어려움만 가중된다면 굳이 의료법인화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화의 결과 우리 병원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인화의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 II. 세제상의 문제

### 1. 법 인 세

현행제도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영리법인과 세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차는 매우 미미하다. 의료법인의 세부담을 일반 영리법인의 그것과 대비한 비율은 1972년 67.5%에서 1982년 71.0%로 다시 1983년에는 90.0%로 높아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점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는 법인 등의 의료단체가 전적으로 자선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그런 단체가 취득한 이윤을 출연자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이를 면세단체로 하고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공익법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64.3%의 낮은 세율로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과중한 조세부담은 공공법인으로 분류되어 세율 5%의 낮은 법인 소득세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의 세율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가 자명해 진다.

학교법인병원인 대학병원은 의료법인 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진료의 고유기능과 의료인의 육성 및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법인을 해산했을 때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의료법인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 제6조에 의거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에 대해선 이를 규제하면서 세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현행의 지정기부금제도에서도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대두된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영리법인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정한도내에서 그 출연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그 종류를 규제할 뿐 아니라 그 범위도 받는 자의 사업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으로 해당 기부금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예를들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출연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이 되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에 출연한 기부금은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던바 병원의 사회적 사명을 인식하고 자기계산을 사회에 헌납하고자 했던 병원인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인식을 정부나 세무당국이 의료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의료법인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인식의 대전환이 없는 한 개인병원을 의료법인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병원인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고귀한 사회의식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2. 소 득 세

현행제도에 따르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84조, 제85조).

정부당국은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대비해 의료인의 재정적 기술적 기반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병원을 가급적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으로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혜택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인병원이 의료법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일반사업자에게 베푸는 혜택도 의료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 대상업종에 포함시켜야 하리라 본다.

## III. 법규 및 행정상의 문제

의료법에 의해서만 설립되는 의료법인은 그 설립(의료법 제30조)과 그 법인의 재산처분 등에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1조) 영리활동 광고행위가 금지되며(의료법 제46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으며(의료법 제

69조) 운영실적을 매년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의료법 제43조) 지분·손익배분율의 설정자체가 금지되어 출연자 등에 이익분배를 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30조(의료법시행령 제18조) 보사부의 의료감시제도를 철저히 적용받으며(의료법 제54조)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민법 제80조).

의료법인은 개인병원에 비해 보사부로부터의 행정적 규제를 심하게 받는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의 경우도 의료법인은 보사부의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예를들어 법규상 필요한 의료인력의 경우 개인병원은 한 두 사람 정원에 미달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의료법인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모든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병원은 나름대로 인원의 감축이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해 볼 여지가 있지만 보사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의료법인의 경우는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료법인 병원이 의료법규를 개인병원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병원을 보다 세밀히 감독,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고 짐을 지운 의료법인 병원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답이 없다는 것이다. 의무만 늘어나고 혜택이 없다면 누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화할 것인가. 의무가 두려운게 아니라 의무와 함께 당연히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볼 때 의료법인이 처해있는 현재의 실정은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법인병원이 79개로 전체병원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병원이 과도한 의무만 지고 있고 그 의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국민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법인화 병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방식은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낮추어주는 방식외에도 예산 부족시 은행융자혜택을 준다든가 병원부지 구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준다든가 취약지역 병원설립시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베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 IV. 맺 음 말

의료법인화의 문제점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의료법인 병원이 여러가지 부과된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제반여건이 성숙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법인 병원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주면서 그렇지 않은 학교법인 병원의 역할과 의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질 수 있는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무에는 적절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까닭은 권리에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